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증거를 공표하는 것은 공정재판을 방해

Regina v. Odhams Press Ltd. and Others

Ex parte Attorney-General

Queen's Bench Division, 1956 년 10 월 2, 11 일

(판결요지)

런던의 매춘행위와 사창가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재물의 하나로, M 이라는 사람에 관한 기사가 일요 신문에 게재되었다. 그런데 그 기사는 M 이 사회악을 조장하고 포주업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점거하여,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다룬 것이었다. 그러나, M 은 이미 그 기사가 발표됐을 당시에는 사창가 경영의 혐의로 체포되어 법원에서 치안판사의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 신문은 법정출입 기자들의 도움을 얻어 매춘행위와 사창가경영에 관한 사건을 취재해 왔으나, 실제로는 편집인과 기자들은 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지 못했으며, M 에 관한 소송절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신문경영인과 편집인 그리고 기자들에 대해서 모욕죄의 혐의로 영장을 발부할 것을 제의한 법무장관(Attorney-General)의 주장에 대해, 피고들은 그 기사가 M 에 대한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계류중인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욕죄로 기소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력히 항변했다.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범의(mens rea)는 법원이 심리해서 처벌하게 되는 모욕죄를 구성하는 필수요건이 아니며, 법정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든지 또는 형사소송절차를 몰랐다는 사실은 법정이 부과하는 벌금과 관련해서 중요할 뿐이다. 심리는 기소된 사건이 재판과정을 방해할만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지, 그 기고가와 인쇄인이 그 결과를 의도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며, 형사사건을 다룬 문제의 기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질 만큼 위험한 것이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따라서 각 피고인들은 법정모욕죄에 해당된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문은 사기나 범죄행위로 여겨지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폭로하거나 언급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언급에 따른 적절한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경우, 법으로 금하는 증거의 공표는 특히 삼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을 다루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다.

(기소이유)

1956 년 6 월 13 일 미칼레프(Micallief)라는 한 사나이가 사창가경영의 혐의로 마릴레본(Marylebone)에서 검거되어 치안판사 앞에 소환되었고, 6 월 27 일에 재소환되어 구금되었으며, 7 월 3 일에 개정되는 런던법정에서의 공판을 위해 대기중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사가 7 월 15 일자의 「더 피플(The People)」지 일요판에 『야수를 체포하라』라는 제하로 공표되었을 때, 그의 재판은 시작되지 않고 있었으며, 다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 기사는 미칼레프를 공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그가 사회악을 조장하고 거리의 여자들을 부리는 일에 관련되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그 신문은 그들이 고용한 던컨 웹(Duncan Webb)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런던에서 행해지는 매춘과 사창가에 대한 일련의 기사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악질적인 사창가 경영자로 알려진 메시나 형제들(Messina brothers)에 대해 특별한 공격을 퍼붓는 것들이었다. 그 날의 기사는 미칼레프가 메시나 형제들과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그가 개인 비서와 메시나 패거리들의 변호사를 두고 있다고 공공연히 자랑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칼레프의 사진 한 장이 그 기사 내용에 첨부되었으며 그의 검거와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법무장관(Attorney-General)은 「더 피플」지의 발행인들과 인쇄인들 오드햄즈 신문사(Odhams Press Ltd.), 편집인 해라 에어스워스(Harry Airstworth), 던컨 웹기자에 대해 그 기사를 발표하게 한 요인과 공표에 따른 여러 가지 모욕의 혐의를 들어 영장발부를 제의했다. 이 소식에 접한 피고들은 그 기사가 미칼레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그들은 진실로 유감의 뜻을 표했으며 법정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진행중인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지식도 없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들이 사창가에 관한 사례들, 특히 메시나 패거리들의 관련 행위에 관한 기사의 게재를 위해 마릴레본과 말보로우 스트리트(Marlborough Street) 치안경찰법원에 법원출입 기자를 배치시켜 얻은 자료에 대한 증거를 선서구술서에 첨부시켰다. 피고들에 관한 선서구술서에 부착된 소송위임장때문에 사보심리가 연기되었으며, 10 월 2 일 사실심리가 재개되자, 피고들은 반대심문을 받았다. 결국, 법무장관(Attorney-General)은 미칼레프에 대해 진행중이었던 소송절차에 관해 웹 또는 편집인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였다. 더 상세한 사실들은 판결문에 기록되어있다.

(원고측 변론)

그 제의를 지지하는 레지날드 맨닝햄 볼러 변호사(Sir Reginald Manningham Butler), 법무장관 로저 윈(Rodegr Winn)과 어브리 워셔(Aubrey Warshaw)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그 기사는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미칼레프에 대해 악감정을 품도록 영향을 미쳤다. 렉스 대 파르케(Rex v. Parke) 사건에서 윌즈(Wills) 판사는 「그것을 흐르기도 전에 정의의 생물을 오염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말한바 있다. 만일 미칼레프가 그 기사의 공표 바로 후에 체포되었더라면 그 내용은 당연히 그에 대한 공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사실,그 기사가 공표됐을 때, 미칼레프는 벌써 체포되었으며, 재판에 계류중이었다. 그 기사의 공표는 재판에 영향을 끼쳐 형법집행의 정당한 절차를 방해 하였으며, 따라서 중대한 법정모욕죄를 구성했다. [왕실 대 이브닝 스탠다드회사(Regina v. Evening Standard Co. Ltd.)의 사건과 로치 대 가반의 사건(Roach v. Garvan)에서의 하드윅 경(Lord Hardwicke C. J.)의 판결에서 인용한 구절 들을 참고하라]

그 기사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해서 미칼레프가 막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몰랐다고 해서 그 기사가 정당한 법의 집행을 저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들을 공표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재판에 계류중인 혐의자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피고들이 미칼레프에 대한 소송절차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들이 약간의 노력만 기울였다라면 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

(피고측 변론)

그 기사내용이 미칼레프의 공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하였고, 피고인들은 법정에 대해서 그 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이었을 당시에 그것을 공표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를 원했다 재판에 계류중인 문제에 관한 논평을 하였을 때, 그것이 법정모욕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그 논평결과가 공판에 영향을 끼쳤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며, 그것을 판정하는 것은 법정이지 그 글을 쓴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일 때, 그에 대한 논평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 계류중인 재판의 상황을 알지 못했거나 공표에 따르는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 법정모욕죄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메트로 폴리탄 뮤직홀 회사 대레이크 사건(Metropolitan Music Hall Co. v. Lake)과 마르퀴즈 타운샌드 사건(Marquis Townshend)의 판례 참고]

피고들은 미칼레프에 대한 재판과정을 몰랐을 뿐 아니라, 그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만일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에 대해 소송절차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대중의 관심이 그것에 집중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미칼레프가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피고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의아심을 갖지않는 것이 태만한 행위일런지는 몰라도, 태만한 행위때문에 법정모욕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이 사건은 왕실 대 이브닝 스탠다드 회사의 사건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진행중인 형사소송절차에 관해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론에 대한 답변)

소송절차가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한 사례를 왕실 대 이브닝 스탠다드 회사(Regina v. Evening Standard Co. Ltd.)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사건은 기자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모욕죄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종류의 기사를 공표하기 전에 적절한 주의와 재판에 계류 중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다.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고서,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책임감 있는 행동이 못된다. 만일, 그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면 그것은 그러한 사건의 반복적인 발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자들과 편집인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 성가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판결은, 공표된 사실들이 진행중인 공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으로서 분명히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적어도 계산된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왕실 대 페인(Regina v. Payne)사건에서의 러셀 판사(Lord Russet C.J.)의 판례를 참고할 것]. 만일 재판이 계류중이라면, 이 기사는 충분히 편견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들은 인정했다. 그들이 비록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재판은 사실상 진행중이었다. 따라서, 그 기사의 게재는 결과적으로 모욕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고다드 판사의 판결)

이 문제에 있어서 법무장관은 「더 피플」지의 발행인과 인쇄자인 오드햄즈 신문사(Odham's Press Ltd.)와 편집인 해리 에어스워스, 그리고 그 신문사에 고용된 던컨 정 기자에 대해 병정보목죄의 혐의를 적용, 영장을 신청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1956년 7월 15일 일요일자 신문에 한 기사를 공표함으로써 런던법정에서 공판을 받았던 안토니 미칼레프라는 사람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 신문은 피고인 중 한 사람인 웨이 제공한 런던에서의 매춘행위와 사창가 실태를 다루는 일련의 기사를 게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기사들 중 그는 악질적인 사창가 경영자이자 매춘행위의 배후 인물로 알려진 일명 메시나 형제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이들 형제들 중의 적어도 한 사람은 부도덕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었다. 7월 15일자 기사는 미칼레프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그는 어떤 식으로든 메시나 형제들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신문의 1면에 『야수를 체포하라』라는 커다란 표제로서 미칼레프의 사진이 그 기사와 함께 게재되었었다. 또한 그 기사는, 그가 사회악을 조장하고 거리의 여자들을 부리는 비열한 일에 종사해 왔으며, 그자신 개인비서와 메시나 패거리들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자랑해 왔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 기사로부터 더 이상 인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공표당시 사실상 계류중에 있던 미칼레프에 대한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쉬웠으며, 또한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5월 13일 검거되어, 사창가 경영의 혐의로 기소된 바로 그 날 마릴레본(Marylebone)의 치안판사에게 인도되었다. 그는 7월 3일 열릴 예정인 런던법정에서의 공판을 위해 6월 27일까지 구금된 채로 있었는데, 어쨌든, 그 기사가 공표된 그 시기까지 그에 대한 공판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본 법정은 그 기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주장들의 사실여부에 관해서는 관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다는 점은 논쟁거리가 아니며 또한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신문의 발행부수가 일주일에 400만부가 넘는다는 소유주의 진술을 고려하면, 그 법정에 배심원으로서 출두한 적어도 몇몇 사람들은 그 신문을 읽었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된다. 한편 기소상에 대한 피고 웨이의 합반은, 미칼레프에 대한 기소가 미리 이루어졌으리라는 사실을 그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험있는 형사사건담당자이자 조사자로 자처하며, 몇 주일 동안 그러한 기사들을 발표해왔던 사람이, 또 그렇게 활동적으로 추적해 왔던 분야의 한 사람이 검거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재판에 계류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는 사실은 확실히 놀랄만한 일이다. 그는, 그가 보석 중이었던 미칼레프를 면회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자유기고가인 언론인이라고 자처하지만, 「더 피플」지를 위해 일해 온, 치터 그리스우드(Peter Grisewood)라는 다른 기사를 보냈다. 이 면회의 목적이 법정에서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문제된 그 기사에 게재된 자료의 대부분은, 미칼레프가 그 날 면회에서 그리스우드에게 말한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음이 밝혀졌다. 역시, 그리스우드와 관련된 증거의 사실여부에 대한 판정이 본 재판과정에는 불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구술서와 법무장관에 의해 반대신문을 받을 때 그가 제시한 증거의 대부분이 불만족스럽고 어떤 점에서는 솔직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던컨 웹에 관한 판결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그 신문사에서는 매춘행위와 사창가가 특히 고들의 예시나 형제들과의 관계에 관한 사건의 보고서들을 입수하기 위해, 마릴레본과 말보로우 거리(Malborough Street) 치안법원에 법정 출입기자 들을 고용, 배치시켰다.

이들 소송위임장의 내용이나 미비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법무장관은 사실상, 미칼레프의 재판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웹이 알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또한 법정의 의견으로는 웹 또는 그 신문의 발행자가 그들 자신들이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를 알기 위해, 어느 정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벌칙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거를 세심하게 조사할 필요는 없다.

법무장관은 웹 의 진술을 인정하여, 웹이 그 재판이 계류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받아들이며, 그렇다면 편집인도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고들 대신에 「몰랐다면 법정모욕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피고측 가디너 변호사(Gardiner)의 중재를 다루어야만 한다.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이제 논점은 범의(mens rea)가 범죄구성의 필수요건이 되는가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벌금형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모욕죄를 다룰 때에는 범의가 범죄구성의 필수요건이라는 주장은 언뜻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례들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이런 류의 보도사건에 연루됨으로써 형사법에 저촉되는 공공연한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만일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뿐만 아니라, 법정모욕죄로 처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민사소송절차가 시작됐으며, 적어도 그 소송절차가 관습법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그것이 배심원들에게 알려 했다면 그때의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윌리엄 토마스 선박회사(William Thomas Shipping Co., Ltd.)의 사건에 대한 몰간(Mallghan) 판사의 판결문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보통법원(Common Law Court)에서는 배심원들이 배석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보통법원과 대법원(Chancellor)에서 달랐던 경우가 바로 그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첫번째 사례는 일반적으로 성 제임스 이브닝 포스트지 사건(St.James's Evening Post Case)으로 불리는 로치 대 가반(Roach v. Garvan)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 행한 하드위크 판사(Lord Hardwicke L. J.)의 판결은 이러한 사건에 관한 한, 언제나 하나의 기준으로서 간주되어 왔다. 그가 다루었던 공표사건은 명예훼손과 법정모욕죄로 간주할 수 있는데, 대법관(Lord Chancellor)은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다룰 것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모욕으로서 간주하는 것은 받아들였다. 발행인은 리드(Read) 여사였는데, 그녀의 행위에 대해, 그녀 자신은 법에 저촉된 그 기사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하드위크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녀는 그 신문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문이나 팜플렛 업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그것때문에 그녀의 생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사실이고 사업일지라도, 그들은 신중하고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명예훼손에 저촉될 만한 글을 쓴 경우 발행인이 그것의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그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됨을 전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에서의 규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나 법의 엄격한 규칙들을 고수할 것이다. 따라서, 리드여사는 모욕죄에 대한 법정의 일반규칙에 따라 처벌되어야만 한다.』 이 판례는 존스(Jones)가 단독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에서 어스킨 판사(Erskine L. J.)가 적용한 바 있다. 여기서도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역시, 법정모욕죄로 간주되었다. 로치 대 가반(Roach v. Carvan)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어스킨 판사는 말했다 『발행인의 경우도 하드윅 관사(Lord Hardwicke)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들이 의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결백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맨스필드 판사(Lord Mansfield)가 말한 바와 같이, 어디에서부터 불법적인 동기가 개입되었는가 하는 사실은 상세히 설명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행위를 묵인한 측은 그러한 동기를 부인할 수 없다. 정상적인 법의 집행에서 볼 때 이번 경우에는 「actus non facit reum, nisi mens sit rea」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무엇이든간에 재판의 목적이 그러한 계획으로 인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확실히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보여준다 즉, 비록 의도가 없고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정이 과할 형벌의 정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법정의 견해로는 이러한 사례들은 법정이 심리, 모욕죄를 적용해서 처벌하게 될 경우, 범의(mens rea)가 필수요건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있다.

심리해야 할 사항은 침의 사건이 재판과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이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에 있는 것이지, 기고가와 발행인이 그러한 효과를 의도 했었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마치 명예훼손을 범한 사람이 자신은 그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를 몰랐으며 또한 명예훼손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 변호의 가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야기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분명하다. 즉, 누군가가 재판이 개정되었거나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가 글이나 말로써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송 당사자 또는 피고에게 편견을 갖도록 의도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도 명백하다. 즉,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실제로 의도된 내용을 공표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커다란 명성을 지닌 한 판사가 강조해 왔던 법률에 관해 언급하고자 하는데, 그는 판결 때마다, 항상 이 나라에서 최고로 외경스러운 칭호를 받고 있는 판사이다. 렉스 대 돌란(Rex Y. Dolan) 사건에서 치프 배런(Chieff Baron)은 계류중인 사건을 공표하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경향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의아심을 가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한 경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법률에 관한 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편견을 유도하기 위한 실제적인 의도는 하찮은 것이다. 나는 본 법정의 법률이 다음과 같은 사례를 지켜 왔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다시 말해, 만일 법정이 나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결론, 즉 거기에는 재판에 영향을 끼칠만한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의도가 없었다면 그들은 면책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현실적으로 편견을 유도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의도가 없는 한 법정모욕죄라고는 볼 수 없다는 관례를 본인은 전적으로 거부한다.

의심할 바 없이 재정해야 할 형벌의 성격- 예를 들면 그것은 금고형에 해당되어야 하는가 하는 식-에 대해 고려할 때는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야만 한다.』

다시 한번,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범의-이것은 범법할 의도를 뜻하는 것인데-는 형벌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요소라는 점이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기사는 M의 체포와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그 기사는 선정적인 문체로 그와 악인들-그들 중 일부는 이 나라에서 매음과 관련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과의 관계에 대해 세밀히 서술하고, 또한 M의 이전의 전과에 대해 10 배로 과장해서 언급하고 있다. 신문사의 기자들과 편집인들은 이들 문제에 대한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제기될 리 없다는 사실을 거의 완전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배심원으로 앉아야만 할지도 모를 사람들이, 사전에 그들이 심판해야 할 악인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널리 공표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렉스 대 파르케(Rex v. Parke)의 판례를 언급하고자 하는데, 그 판례에서 법정은 「그것은 정의의 샘을 흐르기도 전에 매우 효과적으로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우리는 신문이 사기나 범죄행위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것을 노출시키거나 논평할 수 없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재판에 증거제시를 법으로써 금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삼가 하도록 조심하면서, 적절한 규제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위험부담을 무릅쓰다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며, 그러한 결과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1924년 본 법정에서 행해졌다. 렉스 대 이브닝 스탠다드, 맨체스터 가디언 그리고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판례에서 헤이워드 판사(Lord Hewart C. J.)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그가 그 분명히 표현된 제안을 이해했다라면, 그것은 다음의 경우 중 어떤 것이 되었을 것이다. 즉 경찰이나 형사사건 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이, 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아무 것도 얘기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신중하고 조용한 가운데, 그들의 조사를 수행해야만 할 때, 원고측의 견해이건, 피고측의 견해이건 간에, 신문사가 독립적인 아마추어 탐정가들(이들은 원고인 측의 이해이건, 피고측의 이해이건, 완전히 무시하게 되고, 증거법을 무시하게 되는 것인데)을 고용하는 것은 아무튼 그들의 의무가 될 약간의 이유는 되는 것이다. 그들은 자율적으로 조사를 수행하며, 때때로 조사결과를 그것들이 성공적인 것이라고 여기든 혹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든간에, 세상에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언론의 사명이라는 것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아울러 선정적인 거리를 원하는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메트로폴리탄 뮤직 홀 대 레이크(Metropolitan Music Hall Co v. Lake) 사건과 마르퀴즈 타운센드 사건(Marquis Townshend) 등 위 두 가지 사례를 다루어야만 하겠다. 이 사건에서, 알고 있다는 사실이 모욕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필수요건이라는 전제를 가디너(Gardiner)가 성립시킨 바 있는데, 법정은 이들 두 판례의 어떤 것에서도. 문제가 된 기사가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느냐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 사례의 경우, 치티(Chitty) 판사는 계류중인 소송절차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었느냐 혹은 알지 못하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다루었으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자 처벌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주저했었던 것이다. 그 다음의 사례는 정신이상에 관한 매우 특수한 경우로서 어떤 소송절차를 다룬 것이었다. 이들

소송절차 중 하나는 종결됐다. 하지만 그것이 공표되기 이틀 전에 1890 년에 제정된 정신이상에 관한 법의 116 항을 적용한 소상은 수혜자의 지위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제기되었는데, 그 기사를 쓴 사람은 그 소송절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법정이 다음의 사실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았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즉 그 기사에는 그것의 어떤 소송절차와의 관련 여부라든가 혹은, 소송절차에 따른 문제에 관한 어떤 논평도 나타나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콜린스 치안판사(Collins M. R.)는, 모욕죄의 한 구성요소로서 알고 있었느냐, 혹은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로머 판사(Homer L.S.)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들 사례의 어떤 것도 로치 대 가반 사건(Roach v. Garvan)과 존스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나타난 두 판결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방금 까지 우리가 언급해 왔던 3 개 신문의 경우에서 본 법정이 내려온 일련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즉,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또한 공공연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서 기소를 촉구하고 있는 보도사건의 경우에서 볼 때 그러한 공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만큼 위험스러운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피고들 모두 모욕죄를 범했다고 본다. 이제, 벌칙문제를 다루는 것이 남아있다. 법정은 이를 중대한 위반사건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고 웹이 선정적인 신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신문에 발표된 것으로써 매우 선정적인 문체로 기사를 쓴 바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와 같은 문제는 판매부수를 늘리려고 한 목적에서 시작된 일이지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공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문사로 하여금 7 일 내에 대법관에게 벌금 1,000 파운드를 지불하도록 명한다. 만일 그렇지않으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편집인에 대해서는, 본 법정은 증언석에서 그가 취한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할 뿐이다. 그는 이 사건이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으며, 또한 더 이상 이 사건에 연루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편집인은 그의 신문에 공표된 내용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것이 언제나 영국 언론계의 전통으로 되어왔고 그리고 이것은 왕실 대 이브닝 스탠다드 회사 사건(Regina v. Evening Standard Co. Ltd.)에서 법의 한 시행령으로 제정된 것이다. 편집인이나 피고 웹이 재판에 계류중인 소송절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점은 인정되었기 때문에, 비록 이번 사건이 중대한 것이긴 하지만 본 법정은 금고형까지는 부과하지 않았다. 웹은 그 기사를 공표하기 전에 합리적인 모든 주의를 취했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드러난 증거를 볼 때 그들의 주의를 이와 같이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취해야만 하는 주의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벌금형이 이들 피고 둘 다에게 부과되어야만 한다. 이번 경우에 내려질 명령은 다음과 같다. 즉, 이들 피고 모두에게 차압장을 발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영장은 만일 각 피고인들이 7 일 이내에 500 파운드의 벌금을 지불한다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피고들은 본 재판과정에 대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맨닝햄 변호사와 법무장관의 견해) 이 기사가 공표됐을 때 미칼레프의 개인 변호사는 소송절차를 취할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었다. 그리고, 과거에 본 법정이 지적해 왔듯이, 본 법정에서 취해지는 소송절차는 법률관리에 의해 채택되어야만 하고, 그들이 그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법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즉, 미칼레프에 의해 초래된 비용도 과세때문에 피고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부과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고다드 판사의 견해) 그렇다. 그는 그렇게 조치해야만 하고 그것에 관한 한 그 비용을 물게되어 있다.